

전문 간호 시설 및 중간 간호 시설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표준 입소 계약

캘리포니아주
보건 복지국
캘리포니아주 공중 보건부



전문 간호 시설 및 중간 간호 시설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표준 입소 계약

목차

- I. 서론
- II. 본 계약 당사자의 신원
- III. 치료에 대한 동의
- IV. 입소자의 권리
- V. 재정적 계획
 - A. 개인 부담 입소자에 대한 부과금
 - B. 보증금
 - C. 메디-칼(Medi-Cal), 메디케어(Medicare) 또는 보험 가입 입소자에 대한 부과금
 - D. 청구서 및 지불
 - E. 입소자에게 지불될 기타 반환금
- VI. 이전 및 퇴소
- VI. 병상 보유 및 재입소
- VI. 개인 재산 및 소지금
- IX. 사진

- X. 의료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
- XI. 시설의 규칙 및 불만 처리 절차
- XII. 전체 계약서 및 서명 페이지

**전문 간호 시설 및 중간 간호 시설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표준 입소 계약**

목차

첨부문서 A – 시설 소유자 및 면허 소유자의 신원

**첨부문서 B -1 – 개인 부담 입소자 및 개인 보험 입소자에 대한 기본
1일 비용에 포함된 용품 및 서비스**

**첨부문서 B -2 – 개인 부담 입소자 및 개인 보험 입소자에 대한 기본
1일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택적 용품 및 서비스**

**첨부문서 C -1 – 메디-칼 입소자의 기본 1일 비용에 포함된 용품 및
서비스**

**첨부문서 C-2 – 메디-칼 기본 1일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메디-칼이
별도로 조제 기관에 지불하는 용품 및 서비스**

**첨부문서 C -3 – 메디-칼이 보상하지 않으며 메디-칼 입소자가 구입할
수도 있는 선택적 용품 및 서비스**

**첨부문서 D -1 – 메디케어 입소자를 위해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보상하는 용품 및 서비스**

**첨부문서 D -2 – 메디케어가 보상하지 않으며 메디케어 입소자가
구입할 수도 있는 선택적 용품 및 서비스**

첨부문서 E – 의료 정보의 공개 허가서

첨부문서 F – 입소자 권리 장전

입소자의 성명: _____

입소 날짜: _____ 입소자 번호: _____

시설명: _____

전문 간호 시설 및 중간 간호 시설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표준 입소 계약

I. 서론

캘리포니아주 표준 입소 계약은 주정부 법규에 의해 본 시설이 사용하게 되어있는 입소 계약입니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각 개인(또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합니다. 서명하시기 전에 본 협의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질문이 있으신 경우, 협의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시설 직원과 상의하십시오. 서명을하시기 전에 본 계약서를 법률 대리인이나 다른 믿을 수 있는 조연자가 검토하도록 조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귀하는 또한 1-800-231-4024로 주정부 장기 요양 민원 처리 감찰관 사무실(Office of the State Long Term Care Ombudsman)에 전화하셔서, 본 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본 시설을 방문한 주 면허국의 보고서는

_____에 게시되었으며, 보고서의 사본 또는 이전 검열에 대한 보고서 사본은 캘리포니아주 공중 보건부 (CDPH) 면허 인증과의 지역 사무실인

_____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무실의 위치)

본 시설이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지난 3년간의 조사서, 인증서 및 불평 조사 보고서를 보관할 것이며, 요청시 누구나 이 보고서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명을 하실 수 있는 경우, 본 시설에 입소하시려면 반드시 본 계약서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실 수 없는 경우, 귀하의 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본 시설에 입소하실 때 또는 본 시설에의 입소 조건으로 서명을 하셔야 하는 다른 문서는 없습니다.

II. 본 계약 당사자의 신원

정의 설명

본 계약서를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저희의," "저희를," "이 시설," 또는 "저희의 시설" 등의 표현이 다음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시설명을 면허증에 기재된 그대로 기입)

첨부분서 A는 본 시설의 소유자 및 면허 소유자의 성명 그리고 환자 진료 및 본 시설 운영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단체명 및 연락 정보를 제공합니다.

"귀하," "귀하의," "환자" 또는 "입소자"는 본 시설에서 간호를 받게 되는 _____을(를) 의미합니다. 본 계약의 목적상 "입소자"와 "환자"는 동일한 의미의 용어로 사용됩니다.

본 계약의 당사자는 입소자, 시설 그리고 입소자의 대리인입니다. "입소자의 대리인"은 _____을 의미하며, 귀하가 본 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도록 귀하 대신 서명을 하고/또는 귀하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경우에 귀하 대신 의사결정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귀하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느 때라도 귀하의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주: "입소자의 대리인"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가족의 일원 또는 다음 중 어느 사람일 수 있습니다: 후견인, 입소자의 사전 진료 의향서 또는 건강 관리 위임장에 의해 지정된 사람, 입소자의 근친자, 주 법에 준거하여 입소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 법정이 권한을 부여한 사람, 또는 입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에 의해 미성년자를 대표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입소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 자체로 입소자의 대리인이 입소자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소자의 재정 후견인으로서 행동하는 또는 입소자의 자산을 분배하는 책임을 담당할 입소자의 대리인은 이 계약서의 제5항에 따라 입소자의 자산을 본 시설에 상환해야 합니다.

저희 시설이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저희 시설은 귀하가 입소 조건으로 입소 계약서에 서명 또는 연서하고 귀하의 치료비 지불을 보장할 사람을 준비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의 당사자:

입소자: _____

(타이프로 친 또는 인쇄체로 쓴 입소자 성명)

입소자의 대리인: _____

(타이프로 친 또는 인쇄체로 쓴 대리자 성명)

관계: _____

시설명: _____

(면허증에 기재된 그대로 타이프로 친 또는 인쇄체로 쓴 시설명)

III. 치료에 대한 동의

입소자는 이로써 본 시설이 제공하는 일상적인 간호 진료를 비롯해 필요한 경우의 응급 진료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귀하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치료를 거절할 권리 그리고 치료를 거절할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의료적 중대성에 대해 통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일상 간호 진료 및 응급 진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으며, 제공해 드리는 진료 및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자신에 대한 의료적 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또는 없게 되는 경우, 저희는 보호자, 후견인, 근친자 또는 사전 진료 의향서나 건강 관리 위임장의 지정인과 같이 귀하를 대신해 치료 결정을 내릴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의 지시를 따를 것입니다.

입소와 함께, 특정 상황에서 받고 싶으신 진료 및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희망에 대해 상술한 사전 진료 의향서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설에 입소하시는 조건으로 사전 진료 의향서를 작성하시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전 진료 의향서가 있으신 경우, 그 사본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진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며 작성을 하고 싶으신 경우,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을 주선하겠습니다.

IV. 입소자의 권리

본 시설의 입소자들은 입소 당시 및 입소 후, 미국의 시민 또는 주민으로서의 모든 기본 권리 및 자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의 중요성으로 인해, 연방 법규 및 주정부 법규 모두 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주정부 법에 의해 이 계약에는 포괄적인 입소자 권리 장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입소자 권리 장전"이라는 제목의 첨부문서 F에는 주법 및 연방법에 설명된 귀하의 권리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첨부문서는 법규 중 어느 곳에 귀하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위에 언급한 주정부 법규의 위반은 저희 시설 및 저희 직원들에 대한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소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보복의 두려움 없이 저희에게 불만을 제기하실 권리가 있으며, 저희의 서비스나 귀하의 권리에 관해 가질 수 있는 불평, 질문 또는 우려사항을 캘리포니아주 공중 보건부 (CDPH), 면허 인증과의 지역 사무실인

_____에 또는 주정부 장기 요양

민원 처리 감찰관 사무실(State Long Term Care Ombudsman-1페이지에서
연락 정보 참조)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된 "입소자 권리 장전"을 매우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입소자
권리 장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하시기 위해 이곳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V. 재정적 계획

저희는 _____ (날짜)부터, 귀하에게 지불 금액에
대한 대가로 일상 간호 진료 및 응급 진료 그리고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 시설은 다음 정부 보험 프로그램으로부터 지불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인가를 얻었습니다:

_____ 메디-칼 _____ 메디케어

입소를 하실 때 저희가 제공하는 진료에 대한 부과금은 다음 방법으로
지불됩니다:

_____ 입소자 (개인 부담)

_____ 메디-칼

_____ 메디케어 파트 A

메디케어 파트 B: _____

_____ **개인 보험:** _____

(보험회사의 이름 및 보험 번호 기입)

_____ **관리 의료 기관:** _____

_____ **기타:** _____

입소자가 부담하는 비용. 메디-칼, 메디케어 또는 개인 보험은 입소자가 개인 부담금, 개인 보험 부담금 또는 면책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시설은 이 모든 것을 입소자의 부담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입소자가 자신의 부담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입소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소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본 시설에서 제공받으시는 진료가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에 의해 보상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필요하신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이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귀하가 나중에 귀하의 진료 비용을 이 프로그램들이 보상하기 원하시는 경우, 저희 시설을 떠나셔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기입된 경우에만 해당:]

저희 시설은 _____ (날짜)에 메디-칼 프로그램으로부터 철회하려는 저희 의도를 캘리포니아주 의료 서비스부에 통보했습니다. 그 날짜 이후에 입소하시는 경우, 저희는 귀하에게 지불되는 메디-칼 상환을 받을 수 없으며, 그리고 저희 시설에 머무시는 동안 메디-칼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시는 경우 귀하를 더 이상 저희 시설의 입소자로 보유할 의무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귀하께서 그 날짜에 저희 시설에 체류하셨던 경우, 메디-칼 상환 자격을 그 날짜 이후에 갖추시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귀하를 위해

메디-칼 상환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메디-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느 시설도 입소자가 메디-칼 수혜자로 전환하기 전에 얼마 동안이라도 개인 부담 상태로 남아 있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시설은 입소자가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머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입소자가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메디케어 또는 메디-칼 혜택 자격이 없다고 또는 그러한 혜택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A. 개인 부담 입소자에 대한 부과금

저희 시설은 다음의 기본 1일 비용을 부과합니다:

개인적이고 침대가 1개 있는 방: \$ _____

침대가 2개 있는 방: \$ _____

침대가 3개 있는 방: \$ _____

_____ : \$ _____

(기타 다른 숙박 시설을 상술)

개인 부담 입소자 및 개인 보험 입소자에 대한 기본 1일 비용은 첨부문서 B-1에 설명된 서비스 및 용품에 대한 지불 금액을 포함합니다.

입소일에는 기본 1일 비용이 부과되지만, 퇴소일 또는 사망일 이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소일로부터 3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소하시는 경우, 최대한 3일 동안의 기본 1일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주정부가 메디-칼 가격을 저희 정규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시킴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필요하게 된 것이 아닌 한, 기본 1일 비용을 인상시키는 경우 30일 이전에 서면 통지를 해드립니다. 위의 경우, 주 법은 30일 통지 요건을 무시합니다.

첨부분서 B-2에는 기본 1일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인 부담 입소자 및 개인 보험 입소자의 선택적 용품 및 서비스 그리고 그러한 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과금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응급 사태로 인해 용품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귀하께서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는 선택적 용품 및 서비스에 한해서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선택적 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과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서면 통보를 하겠습니다.

입소하신 이후에 메디-칼 수혜 자격을 갖추시는 경우, 서비스 및 용품의 1일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선택적 서비스 및 용품 가격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메디-칼 프로그램이 본 시설에서의 귀하 체류 비용에 대한 지불을 확인하는 시점에서 보험 보상에 대한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설명해 드립니다.

B. 보증금

개인 부담 입소자 또는 개인 보험 입소자이신 경우,
\$_____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은 귀하께서 개인 계좌를 종결하시는 날짜 또는 저희가 메디-칼 지불 금액을 접수하는 날짜 중 늦은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비 또는 처리비의 공제 없이 반환해 드립니다.

저희 시설이 귀하에게 제공하는 진료는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에 의해 보상되는 경우,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C. 메디-칼, 메디케어 또는 보험 가입 입소자에 대한 부과금

저희 시설에 입소하신 후에 메디-칼 수혜 자격을 갖추시는 경우, 귀하는 반환금을 받으실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 보험 부담 비용 또는 개인 부담 비용을 제외하고 나중에 메디-칼이 지불하는 서비스 및 용품에 대해 이미 지불하신 모든 지불 금액을 귀하에게 환불해 드릴 것입니다. 저희 시설이 메디-칼 프로그램의 지불 금액을 접수하게 되면, 귀하에게 환불해 드릴 것입니다.

메디-칼, 메디케어 또는 개인 보험의 수혜 자격이 있으신 경우 그리고 저희가 참여 기관인 경우, 기본 1일 비용에 대한 지불 금액을 그들로부터 받기로 동의합니다. 귀하의 체류 기간 동안 제공된 그리고 메디-칼의 지불 승인을 받은 모든 메디-칼 보상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디-칼 카드 또는 수혜 자격 증명을 제시하시면, 본 시설이 메디-칼 상환금 청구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여전히 모든 면책금, 개인 부담금, 개인 보험 부담금 및 메디-칼, 메디케어 또는 개인 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서비스와 용품에 대한 부과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에게 지불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면책금, 개인 부담금, 개인 보험 부담금의 금액은 저희 시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메디-칼, 메디케어 또는 개인 보험 회사가 이러한 금액을 결정합니다.

첨부문서 C-1, C-2 및 C-3는 메디-칼 1일 비용이 보상하는 서비스, 메디-칼이 보상하지만 1일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및 메디-칼이 보상하지 않지만 귀하께서 지불하시는 경우 가용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첨부문서 D-1 및 D-2는 메디케어가 보상하는 서비스 및 메디케어가 보상하지 않지만 귀하께서 지불하시는 경우 가용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메디-칼은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보상되는 용품 및 서비스 만을 지불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칼이 특정 용품 또는 서비스가 의료적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저희는 귀하께서 그 용품 또는 서비스를 여전히 원하시는지 그리고 귀하 자신이 부담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부를 문의할 것입니다.

저희는 응급 사태로 인해 용품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귀하께서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는 선택적 용품 및 서비스에 한해서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선택적 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과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서면 통보를 하겠습니다.

D. 청구서 및 지불

저희는 매달 귀하께서 지불하셔야 할 부과금의 항목별 명세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귀하는 매달 _____ (날짜 기입)에

청구금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합니다.

만기일에서 _____ 일 후가 되면 지불기한을 지난 것입니다. 연체
계좌에 대해서는 _____ % 이자율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 입소자에게 지불될 기타 반환금

상기 항목 C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메디-칼 수혜 자격을 갖추시기 전에
지불하신 서비스 및 용품 비용을 메디-칼이 지불하게 되는 결과로 또는
이전에 지불하신 보증금의 반환으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소를
하실 때에도, 1일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선택적 서비스용으로 지불한 선불
금액과 같은 기타 자금의 반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저희
시설을 떠나시기 14일 이내에 반환금이 지불될 것입니다. 행정비 또는
처리비를 공제하지 않고 반환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VI. 이전 및 퇴소

저희는 귀하의 자발적인 퇴소나 다른 시설로의 이전을 위한 준비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귀하가 원하지 않는 경우, 응급 사태를 제외하고 또 해당 주 및 연방
요건에 준하여 각 사례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 사전 서면 통보가 주어지지
않은 한, 귀하를 저희 시설 내 다른 방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에게는 귀하를 메디케어 인증 침대로 또는 메디케어 인증 침대로부터 이전시킬 목적을 가진 그러한 이전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시설로의 이전 또는 귀하가 원하지 않으시는 퇴소에 대한 서면 통보는 30일 이전에 미리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또는 퇴소의 이유가 귀하의 건강 및 안전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좀더 급한 통보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귀하의 건강이 향상된 경우, 또는 저희 시설에 체류하신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30일 미만의 사전 통보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전 통보에는 유효 날짜, 귀하가 이전 또는 퇴소되는 장소,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서 귀하가 원하지 않는 다른 시설로의 이전 또는 퇴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저희 시설에서 귀하의 필요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귀하의 건강이 충분히 향상되어 더 이상 저희 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경우;
3. 귀하의 저희 시설 체류가 다른 사람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4. 저희 시설 체류 비용이 지불되지 않았거나, 메디케어, 메디-칼, 또는 개인 보험이 지불하도록 조치되지 않은 경우;
5. 저희 시설의 운영이 중지된 경우;

6. 귀하 재정에 대한 중대한 부실 표시 또는 사기적인 허위 진술.

저희가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에 참여하는 경우, 귀하의 지불 방법이 개인 부담 또는 메디케어에서 메디-칼로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귀하를 본 시설에서 이전 또는 퇴소 조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서면 통보를 통해 귀하에게 이전 또는 퇴소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의료 서비스부에 항소하실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릴 것이며, 주정부 장기 요양 민원 처리 감찰관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원하시지 않는 이전 또는 퇴소 조치를 당하신 경우, 저희는 법에 따라 이전 및 퇴소 계획을 제공할 것입니다.

VII. 병상 보유 및 재입소

귀하가 7일 이하로 급성기 병원에 이전되어야 하는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에게 귀하의 침대를 보류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할 것입니다.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은 이 통보를 받은지 24시간 이내에 저희가 귀하의 침대를 보류하고 있어야 할지 여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메디-칼이 귀하의 진료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 저희가 귀하의 침대를 최대한 7일까지 보류하는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귀하에게 메디-칼 수혜 자격이 없고 귀하의 보험이 1일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저희가 귀하의 침대를 보류하는 각 날짜에 대해 \$_____ 을(를) 지불하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의 침대 보류와 관련된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기한 통보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저희는 법(캘리포니아주 법규집 제22편 제72520(c)절 및 73504(c)절)에 따라 저희 시설에서 가장 먼저 이용 가능한 침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저희 시설이 메디-칼에 참여하고 귀하에게 메디-칼 수혜 자격이 있으며 귀하께서 입원 또는 기타 치료로 인해 7일 이상 저희 시설을 떠나 있는 경우, 그리고 귀하께서 저희 시설의 진료를 필요로 하며 재입소를 원하시는 경우, 저희는 귀하를 재입소시키고 가장 먼저 이용 가능한 반 독실 침대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III. 개인 재산 및 소지금

저희 시설에는 주 법에 따른 도난 및 분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입소하실 때 귀하의 개인적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저희 시설의 정책 및 절차의 사본을 비롯해 이러한 정책 및 절차 요건이 명시된 주 법의 사본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이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에 참여하고 귀하가 저희에게 서면 허가를 하시는 경우, 저희는 모든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법규에 준거하여 귀하의 개인 소지금을 보관하기로 동의할 것입니다. 저희가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의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개인 소지금을 저희 시설의 입소 조건으로 저희에게 맡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요청하시는 경우, 귀하의 개인 소지금 보관과 관련된 정책, 절차 및 허가서 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IX. 사진

귀하는 저희가 신원 확인 및 치료 목적을 위해 귀하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다. 저희는 귀하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귀하의 사진을 촬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X. 의료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

귀하에게는 귀하의 의료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Attachment E**에 있는 "의료 정보의 공개 허가서" 양식을 작성하십시오으로써 저희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귀하의 의료 정보를 공개하도록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XI. 시설의 규칙 및 불만 처리 절차

귀하는 저희가 확립하는 합리적인 규칙,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기로 동의하십니다. 귀하께서 입소하실 때, 저희는 그러한 규칙, 정책 및 절차를 비롯해 그에 대한 변경 제안 절차가 포함된 사본을 드립니다.

본 시설의 관행에 관한 입소자의 불평 해결을 위한 저희 시설의 불만 처리 절차 사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저희는 또한 본 시설에 관한 귀하의 불평 해결을 위한 불만 처리 절차 사본을 드립니다. 귀하는 또한 귀하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불만이나 불평과 관련해 다음 기관들을 접촉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중 보건부

(면허 인증과 지역 사무실)

전화번호: _____

(또는)

주정부 장기 요양 민원 처리 감찰관 프로그램

전화번호: _____

XII. 전체 계약서

저희 시설의 입소 목적을 위한 귀하와 저희 사이의 전체 계약서는 이 계약서와 그에 따른 첨부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하와 저희 시설 사이에는 귀하의 저희 시설 입소 조건과 관련된 다른 계약서, 목계, 제한 규정, 보증서 또는 대표자가 없습니다. 이 계약서는 귀하의 저희 시설 입소와 관련된 이전의 모든 합의나 목계를 대체합니다.

모든 표제 및 항목은 단지 편리를 위한 것이며 아무런 독립적 의미가 없습니다.

본 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전적으로 유효하며 효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때때로 본 시설이 부분적인 지불금을 허용하는 것은 이 계약서의 지불 요건 또는 이 계약서 상의 본 시설의 권리에 대한 계속적인 포기를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서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입소자는 정식으로 위임한 입소자의 대리인에 대해 언급된 사항 이외에는 이 계약서 상의 이권을 할당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귀하가 요청하시는 경우, 서명이 된 계약서, 모든 첨부문서 및 귀하가 입소 당시에 서명하신 모든 다른 문서의 사본을 귀하 또는 귀하의 법적 대리인에게 제공할 것이며, 입소 당시의 모든 지불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입소자 및 시설은 이 입소 계약서의 약관에 동의합니다 :

시설의 대리인	날짜
입소자	날짜
입소자의 대리인 – 해당되는 경우	날짜

첨부분서 A
시설 소유자 및 면허 소유자의 신원

_____의 소유자 및 면허 소유자:
(시설명)

(소유자/면허 소유자의 성명)

본 시설의 환자 진료 상황에 관해서나 본 시설의 운영에 관해 질문이 있으신
경우 다음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 및 시설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단체명)

주소: _____

전화: _____

첨부분서 C-1

메디-칼 입소자의 기본 1일 비용에 포함된 용품 및 서비스

숙식
간호 서비스
호흡 요법
응급 산소 및 기타 장비
<p>개인 위생 품목 및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치 세척제 • 의치 접착제 • 치실 • 구강 세정 면봉 • 머리빗 및 브러시 • 로션 • 면도 비누/크림 • 칫솔 및 치약 • 세탁 • 티슈 와이프 • 면도기 • 샴푸 • 정기적인 머리 다듬기 • 정기적인 손톱 손질
<p>의료 및 간호 진료에 흔히 사용되는 장비, 용품 및 서비스 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휠체어 (개인 환자 전용이 아님) • 요실금 용품

유지 요법

- 동작의 범위
- 환자가 침대에서 일어나기 돕기
- 활동 제공
- 침대에서 위치 변화 돕기
- 자기 관리 및 일상 생활 활동 보조
- 적절한 신체 정렬 및 관절 동작 보존

비처방약:

- 아스피린
- 아세트아미노펜
- 시럽 기침약

첨부분서 C-2

I. 메디-칼 기본 1일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메디-칼이 별도로 조제 기관에 지불하는 용품 및 서비스

의사 서비스
검안 서비스
치과 서비스
청력 서비스
첨부분서 C-1에 기재되지 않은 내구성 의료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욕창 예방 침대 • 산소 농축기 및 부속품 • 간헐적 양압 호흡 (IPPB) 장비 • 응급 사태를 제외한 산소 투여기 및 탱크 • 부품 및 수리를 포함한 환자 개인용 맞춤형 장비 (지팡이, 목다리, 휠체어) • 매클라렌 또는 포곤버기 유모차 • 골형성 자극기 • 운곽 성형 구조 (VASCO-PASS, 컷아웃폼) • 다기능 침대
기초정보군(MDS)에 확인되어 있고 환자 진료 계획에 포함된 전문 치료사 제공 치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 요법 • 작업 요법 • 언어 요법
척추 교정 서비스
실험실 서비스

외래환자 헤로인 중독치료 서비스
조직적 외래 진료소 서비스
가정 간호 기관 서비스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서비스
기도 또는 심령 치유
재활 센터 외래환자 서비스
보철기구 및 보장구

(다음 페이지에 계속)

첨부문서 C-2

(계속)

메디-칼 기본 1일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메디-칼이 별도로 조제 기관에
지불하는 용품 및 서비스

병원 외래진료부 서비스
만성 혈액 투석
족병 치료 서비스
심리학
방사선학 (엑스레이)
조기 및 정기 선별검사 서비스
보청기
혈액 및 혈액 제제
마취 전문 간호사 서비스
입원 환자 서비스
안경, 인공눈 및 기타 눈 보조기구
약제사 서비스 및 처방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슐린 • 처방전이 필요한 약
첨부문서 C-1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 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맥주사 처치대 • 정맥주사 배관 • 수혈 세트 • 비강 배관

• 시약 검사 세트 (소변 검사)
다른 서비스 기관이 사전 허가를 받은 기타 장비 및 용품
Short-Doyle 메디-칼 제공 기관 서비스 (정신 건강)
정형용 견인장치 및 부속물
교통

첨부분서 C-3

메디-칼이 보상하지 않으며 메디-칼 입소자가 구입할 수도 있는 선택적 용품
및 서비스

용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가격

첨부문서 D-1

메디케어 입소자를 위해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보상하는 용품 및 서비스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가 관리하며, 기본 1일 비용 규정 하에서 보상되는 용품 및 서비스가 무엇이며, 입소자가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메디케어가 해당 서비스 분배 기관에 지불하게 되어있는 용품 및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연방 정부가 규정합니다.

다음의 두페이지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Medicaid) 서비스 센터가 발행한 “귀하의 메디케어 혜택”이라는 제목의 브로셔에서 발췌되었으며, 메디케어 전문 간호 시설에 대한 보상을 설명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1-800-MEDICARE(1-800-633-4273)로 무료 전화를 하시면 이 간행물의 사본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간행물을 비롯해 다른 유용한 정보를 메디케어 웹사이트 www.medicare.gov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특정 조건 하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전문 간호 시설(SNF)에서의 전문 간호 비용을 보상합니다. 전문 간호는 귀하에게 전문 간호가 필요하거나 재활 요법 직원이 귀하의 간호를 관리, 관찰 및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제공됩니다. 전문 간호의 예로는 멸균 드레싱 교환, 물리 요법 등이 있습니다. 전문 간호는 메디케어 인증 전문 간호 시설에서 제공됩니다. 비전문 직원이 제공할 수 있는 간호는 전문 간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는 단기간(100일까지)에 제공되는 매일 필요한 전문 간호 서비스를 보상합니다.

메디케어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부응되는 경우에 한해서 전문 간호를 보상합니다:

1.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가 있고 사용 가능한 수혜 기간 날짜에 여유가 있다.
2. 적절한 병원 체류 조건에 부응된다. 이것은 입원 환자로서 퇴원하는 날을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퇴원한 후 단기간 (보통 30일) 이내에 전문 간호 시설에 입소해야 한다. 전문 간호 시설을 떠난 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또는 다른 전문 간호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추가적인 전문 간호 시설 혜택을 받기 위해 또 다시 적절한 3일 동안의 병원 체류가 필요하지 않다. 이 정책은 전문 간호 시설에 체류하는 동안 전문 간호를 중단한 후 30일 이내에 다시 전문 간호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담당의사가 귀하에게 전문 간호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전문 간호 또는 재활 직원에 의해 또는 직접적인 감독 하에 제공되어야 한다. 전문 재활 서비스 만을 받기 위해 전문 간호 시설에 입소한 경우, 이러한 치료 서비스가 1주일에 5일 내지 6일만 제공되는 경우에도 매일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이러한 전문 서비스들은 메디케어가 인증한 전문 간호 시설에서 제공된다.

첨부문서 D-1 (계속)

5. 이러한 전문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은 건강 상태를 위해 필요하다: a) 적격한 3일 입원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거나, 또는: b) 메디케어가 보상하는 전문 간호 시설의 진료를 받는 동안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인해 쓰러졌고 손목을 빼었기 때문에 전문 간호 시설에 입소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반 독실, 식사, 전문 간호 및 재활 서비스 그리고 마취, 제한된 구급차 서비스, 혈액, 화학 요법, 임상시험, 신장 투석, 내구성 의료 장비, 정신 건강 진료, 말기 환자 간호, 일부 종류의 이식, 의사가 처방한 약학적 및 의료용 장비 등의 서비스를 보상합니다.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언어 치료 및 의사가 처방한 건강 관련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에는 독간호 또는 방안에 설치된 텔레비전이나 전화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한, 독실 사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는 메디케어 **파트 B**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 시설의 운영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첨부 문서 E

의료 정보의 공개 허가서

본인 _____은(는) 이로써
(입소자 성명)

다음 시설
_____이(가)
(시설명)

다음에 상술한 바와 같이 본인의 병력,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 진료 또는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가합니다:

이 허가서는 다음 사람들에 대한 공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서는 다음 종류의 의료 정보에 대한 공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서에 준거하여 기록 및 정보가 공개되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록 및 정보를 단지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서는 즉시 유효하게 되며 _____까지 계속해서 유효할 것입니다.
(날짜)

본인은 이 허가서에 준거하여 기록 및 정보가 공개되는 사람들은 본인에게서 다른 하나의 허가서를 얻거나 또는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한 그 의료 정보를 다시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본인의 의료 정보를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사람(들) 및/또는 단체(들)나 의료 정보의 공개를 통치하는 법의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그들은 본인의 허가 없이 그러한 정보를 재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의 재공개는 주법이나 연방법으로 제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또한 이 시설이 이 서명된 허가서의 사본을 본인에게 제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느 때라도 서면으로 이 허가서를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또한 본인의 서면 철회는 본인이 철회를 하기 전에 본 허가서의 첫페이지에 기재된 사람(들) 및/또는 단체(들)가 본 허가서에 의존해 공개한 본인의 정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은 이 허가서에 서명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시설은 해당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한 본인의 서명 거부를 이유로 치료 또는 기타 거강 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입소자 서명:_____ 날짜:_____

입소자의 대리인*

서명:_____ 날짜:_____

* 입소자의 대리인은 다음 이유로 입소자를 대신해 서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첨부문서 F

입소자 권리 장전

캘리포니아주 공중 보건부(CDPH)는 전문 간호 시설 또는 중간 간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포괄적인 입소자 권리 장전을 작성했습니다.

입소자 권리 장전에 언급된 사항들의 의미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경우, 해당 법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소자의 권리는 캘리포니아주 보건 안전법의 제1599절; 캘리포니아주 법규집 제22편의 전문 간호 시설에 관한 제72527절 및 중간 간호 시설에 관한 제73523절; 그리고 미국 연방 법전의 제42편, 제4장, 제483.10부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 안전법은 약자 HSC로, 캘리포니아주 법규집 제22편은 약자 22CCR로 그리고 미국 연방 법전의 제42편은 약자 42CFR로 표시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1-800-231- 4024로

주정부 장기 요양 민원 처리 감찰관 사무실에 또는

_____로 캘리포니아주 공중 보건부

(CDPH) 면허 인증과의 지역 사무실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입소자 권리 장전

캘리포니아주 법규집 제22편

제72527절. 전문 간호 시설

(a) 환자에게는 이 절에 열거된 권리들이 있으며, 시설은 이 권리들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설은 이러한 권리들을 포함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확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의 사본을 만들어 환자 및 환자의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정책은 요청시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 (1) 환자의 승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소 이전, 입소 당시 및 체류 기간 동안에 이러한 권리 그리고 환자의 행동을 관리하는 모든 규칙과 규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입소 이전, 입소 당시 및 체류 기간 동안에 시설의 기본 1일 비용으로 보상되지 않는 서비스 또는 사회보장법 제18편 또는 제19편 하에서 보상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부과금을 포함해 시설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관련 부과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3) 의사로부터 전체적 건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학적, 간병적 및 심리사회적 필요성의 확인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는 총체적 진료 계획에 즉각적이고 진행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권리.

- (4) 치료나 의료 절차 또는 실험적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절할 권리.
- (5) 제안된 치료 또는 의료 절차를 수락할지 또는 거절할지 여부와 관련된 환자의 결정에 중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신요법 약물의 투여 또는 신체의 속박 또는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될 수 있는 특정 장치의 장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의 공개는 제72528(b)절에 명시된 정보의 공개를 포함해야 한다.
- (6) 단지 의료적 이유로 또는 환자의 복지를 위해 또는 다른 환자의 복지를 위해 또는 체류 비용의 미납의 경우에 한해서 이전 또는 퇴소되어야 하며, 질서 있게 이전 또는 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전 통보를 받을 권리. 그러한 조치는 환자의 건강 기록에 증거서류로 기록되어야 한다.
- (7) 체류 기간 동안 환자로서의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격려받고 도움을 받으며, 그와 관련해 불만을 표현하고 시설 직원 및/또는 환자가 선택하는 외부 대리인에게 정책 및 서비스의 변경을 추천할 수 있고, 속박, 방해, 강요, 차별 대우 또는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 (8)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선조, 국적, 성적 성향, 장애, 질병, 결혼 상황 또는 등록 동거인 상태에 근거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 (9) 개인적 재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시설이 제72529절의 조항에 따른 재정적 책임의 서면 위임을 수락하는 경우 최소한

환자를 위해 수행된 재정적 거래에 대한 분기별 회계 명세서를 제공받을 권리.

- (10) 정신적 및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11) 재정 및 건강 기록의 비밀 유지를 보장받고, 법이 허용하는 공개를 제외하고 기록의 공개를 승인 또는 거부할 권리.
- (12) 치료 및 개인 위생 보조에 관한 은밀성을 포함해 배려심과 존중심 그리고 존엄성 및 개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 근거한 대우를 받을 권리.
- (13) 환자의 치료 계획에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를 시설을 위해 수행하도록 요구받지 않을 권리.
- (14) 환자가 선택하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의사소통하며, 개인적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고 주고 받을 권리.
- (15)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사회적, 종교적 및 커뮤니티 그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16) 환자 자신이나 다른 환자의 건강, 안전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공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개인적인 의복 및 소지품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17) 결혼을 했거나 동거인으로 등록된 환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같은 시설의 환자이며 같은 방에 함께 있는 것이 허락된 경우, 그러한 사람의 방문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

- (18) 매일 방문 시간의 확립에 대한 권리.
- (19) 어느 때라도 환자나 환자의 대리인이 요청하면 성직자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20) 환자의 병세가 위중한 경우, 의학적 금기 사항이 아닌 한 환자가 선택하는 사람의 방문을 받을 권리.
- (21) 가족, 친구, 성직자, 복지사의 방문 또는 전문적이거나 사업 목적을 위한 방문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
- (22) 합리적으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은밀하게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권리.
- (23) 보건 안전법 제1320절의 조항에 준하여 어느 특정 공급처로부터의 약품 구입 또는 용품이나 장비의 대여 또는 구입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
- (24) 환자의 징계 또는 직원의 편의를 위한 정신요법 약물의 투여 및 신체의 속박을 받지 않을 것이며, 제72018절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환자나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인 상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응급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화학적 억제 수단으로 정신요법 약물을 투여받지 않을 권리. 화학적 억제 약물이 응급사태 중 투여되는 경우, 그러한 약물은 단지 응급 상태를 처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환자의 개인적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단지 구체적이고 제한된 시간 동안 사용되어야 한다.

(25) 보건 안전법 제1599.1절에 상술된 기타 권리들.

(26) 복지 및 시설법 제5325 및 5325.1절에 상술된 정신의학적 평가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들의 기타 권리들.

(27) 복지 및 시설법 제4512절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발달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위해 복지 및 시설법 제4502, 4503 및 4505절에 상술한 기타 권리들.

(b) 상기 설명한 환자의 권리는 법이 그러한 권리의 거부 또는 제한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거부되고 제한될 수 있다. 그러한 권리의 거부 또는 제한에 대한 사유는 환자의 건강 기록에 증거서류로 기록되어야 한다.

(c) 환자가 이러한 권리들 및 제안된 치료의 성격과 결과를 이해할 능력을 결여한 경우, 환자의 대리인은 그 권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한 그리고 그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 항목에 상술된 권리를 소유한다. 환자의 무능력은 주 법에 따라 법정에 의해, 또는 환자나 환자 대리인이 환자 의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환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d) 환자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 검인법 (제1800절과 함께 시작) 제4부문의 제3부 및 4부에 의해 위임된 후견인, 환자의 유효한 건강 관리 영속 위임장이 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 환자의 근친자, 성문법 및 판례법에 준거하여 의사결정자로 지정된 기타 적절한 대행자, 유언 검인법 (제3200절과 함께 시작) 제4부문의 제7부에 준거해 치료를 인가한 법정이 임명한 사람, 또는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를 대표하도록 합법적으로 인가받은 사람이다.

(e) 동의서, 사전 인지 동의서 및 치료 또는 의료 조치의 거부에 관해 본 항목이 확립한 환자의 권리에 대한 정책 및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 (1) 정신요법 약물의 투여 또는 신체의 속박 또는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될 수 있는 특정 장치의 장기 사용과 관련해 시설이 사전 인지 동의서를 취득했거나 치료 또는 의료 조치가 거절된 것을 검증하는 방법.
- (2) 무능력하게 된 환자에게 유효한 건강 관리 영속 위임장이 지정한 후견인 또는 대리인이 없을 때, 시설이 환자의 의사와 상담을 통해 현행 성문법 및 판례법에 준거하여 환자의 대리인 역할을 할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

제73523절. 중간 간호 시설

(a) 환자에게는 이 절에 열거된 권리들이 있으며, 시설은 이 권리들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설은 이러한 권리들을 포함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확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의 사본을 만들어 환자 및 환자의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정책은 요청시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 (1) 환자의 승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소 이전, 입소 당시 및 체류 기간 동안에 이러한 권리 그리고 환자의 행동을 관리하는 모든 규칙과 규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입소 이전, 입소 당시 및 체류 기간 동안에 시설의 기본 1일 비용으로 보상되지 않는 서비스 또는 사회보장법 제18편 또는 제19편 하에서 보상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부과금을 포함해 시설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관련 부과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3) 의사로부터 전체적 건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학적, 간병적 및 심리사회적 필요성의 확인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는 총체적 진료 계획에 즉각적이고 진행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권리.
- (4) 치료나 의료 절차 또는 실험적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절할 권리.
- (5) 제안된 치료 또는 의료 절차를 수락할지 또는 거절할지 여부와 관련된 환자의 결정에 중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신요법 약물의 투여 또는 신체의 숙박 또는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될 수 있는 특정 장치의 장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의 공개는 제73524(c)절에 명시된 정보의 공개를 포함해야 한다.
- (6) 단지 의료적 이유로 또는 환자의 복지를 위해 또는 다른 환자의 복지를 위해 또는 체류 비용의 미납의 경우에 한해서 이전 또는 취소되어야 하며, 질서 있게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전 통보를 받을 권리. 그러한 조치는 환자의 건강 기록에 증거서류로 기록되어야 한다.
- (7) 체류 기간 동안 환자로서의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격려받고 도움을 받으며, 그와 관련해 불만을 표현하고 시설 직원

및/또는 환자가 선택하는 외부 대리인에게 정책 및 서비스의 변경을 추천할 수 있고, 속박, 방해, 강요, 차별 대우 또는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 (8) 개인적 재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시설이 제73557절의 조항에 따른 재정적 책임의 서면 위임을 수락하는 경우 최소한 환자를 위해 수행된 재정적 거래에 대한 분기별 회계 명세서를 제공받을 권리.
- (9) 정신적 및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10) 재정 및 건강 기록의 비밀 유지를 보장받고, 법이 허용하는 공개를 제외하고 기록의 공개를 승인 또는 거부할 권리.
- (11) 치료 및 개인 위생 보조에 관한 은밀성을 포함해 배려심과 존중심 그리고 존엄성 및 개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 근거한 대우를 받을 권리.
- (12)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선조, 국적, 성적 성향, 장애, 질병, 결혼 상황 또는 등록 동거인 상태에 근거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 (13) 환자의 치료 계획에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를 시설을 위해 수행하도록 요구받지 않을 권리.
- (14) 환자가 선택하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의사소통하며, 개인적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고 주고 받을 권리.
- (15) 사람들과 만나고, 사회적, 종교적 및 커뮤니티 그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16) 환자 자신이나 다른 환자의 건강, 안전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공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개인적인 의복 및 소지품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17) 결혼을 했거나 동거인으로 등록된 환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같은 시설의 환자이며 같은 방에 함께 있는 것이 허락된 경우, 그러한 사람의 방문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
- (18) 매일 방문 시간의 확립에 대한 권리.
- (19) 어느 때라도 환자나 환자의 대리인이 요청하면 성직자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20) 환자의 병세가 위중한 경우, 의학적 금기 사항이 아닌 한 환자가 선택하는 사람의 방문을 받을 권리.
- (21) 가족, 친구, 성직자, 복지사의 방문 또는 전문적이거나 사업 목적을 위한 방문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
- (22) 합리적으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은밀하게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권리.
- (23) 보건 안전법 제1320절의 조항에 준하여 어느 특정 공급처로부터의약품 구입 또는 용품이나 장비의 대여 또는 구입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
- (24) 환자의 징계 또는 직원의 편의를 위한 정신요법 약물의 투여 및

신체의 속박을 받지 않을 것이며, 제73012절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환자나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인 상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응급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화학적 억제 수단으로 정신요법 약물을 투여받지 않을 권리. 화학적 억제 약물이 응급사태 중 투여되는 경우, 그러한 약물은 단지 응급 상태를 처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환자의 개인적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단지 구체적이고 제한된 시간 동안 사용되어야 한다.

(25) 보건 안전법 제1599.1절에 상술된 기타 권리들.1.

(26) 복지 및 시설법 제5325 및 5325.1절에 상술된 정신의학적 평가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들의 기타 권리들.

(27) 복지 및 시설법 제4512절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발달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위해 복지 및 시설법 제4502, 4503 및 4505절에 상술한 기타 권리들.

(b) 상기 설명한 환자의 권리는 법이 그러한 권리의 거부 또는 제한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거부되고 제한될 수 있다. 그러한 권리의 거부 또는 제한에 대한 사유는 환자의 건강 기록에 증거서류로 기록되어야 한다.

(c) 환자가 이러한 권리들 및 제안된 치료의 성격과 결과를 이해할 능력을 결여한 경우, 환자의 대리인은 그 권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한 그리고 그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 항목에 상술된 권리를 소유한다. 환자의 무능력은 주 법에 따라 법정예 의해, 또는 전문 면허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환자의 공인 의료 전문인의 결정에 환자나 환자 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전문 면허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환자의 공인 의료 전문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d) 환자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 검인법 (제1800절과 함께 시작) 제4부문의 제3부 및 4부에 의해 위임된 후견인, 환자의 유효한 건강 관리 영속 위임장이 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 환자의 근친자, 성문법 및 판례법에 준거하여 의사결정자로 지정된 기타 적절한 대행자, 유언 검인법 (제3200절과 함께 시작) 제4부문의 제7부에 준거해 치료를 인가한 법정이 임명한 사람이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를 합법적으로 대표하도록 인가받은 사람으로부터 사전 인지 동의서를 취득해야 한다.

(e) 동의서, 사전 인지 동의서 및 치료 또는 의료 조치의 거부에 관해 본 항목이 확립한 환자의 권리에 대한 정책 및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 (1) 정신요법 약물의 투여 또는 신체의 속박 또는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될 수 있는 특정 장치의 장기 사용과 관련해 시설이 사전 인지 동의서를 취득했다는 것을 검증하는 방법.
- (2) 무능력하게 된 환자에게 유효한 건강 관리 영속 위임장이 지정한 후견인 또는 대리인이 없을 때, 시설이 전문 면허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환자의 공인 의료 전문인과 상담을 통해 현행 성문법 및 판례법에 준거하여 환자의 대리인 역할을 할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

캘리포니아주 보건 안전법 제1599절

1599.1. 서면 정책; 환자의 권리 및 시설의 의무

환자의 권리에 관한 정책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환자, 보호자, 근친자, 후원 기관 또는 대리 수취인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책 및 절차는 시설에 입소하는 각 환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규정에 명시된 의무에 추가해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의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 (a) 시설은 시설의 모든 직능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고용해야 한다.
- (b) 각 환자의 양호한 개인 위생 상태가 나타나야 하며, 욕창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해야 하고, 각 환자의 요실금을 방지하고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c) 시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품질 및 분량에 있어서 환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 (d) 시설은 각 환자의 필요와 흥미에 부응할 수 있는 직원과 장비를 갖춘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자기 관리 및 정상 활동으로의 회복을 장려해야 한다. 환자들이 개인적인 필요에 맞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e) 시설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보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f) 모든 간호 부서에서 간호사 호출 시스템이 순조롭게 유지되어야 하며, 간호 직원과 환자 사이에 시각 및 청각 신호에 의한 의사소통이 유지되어야 한다. 언제나 각 환자의 침대로 이어지는 연장 코드를 즉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g)(1) 시설이 어느 보조 의료 서비스 기관에 대해 중대한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이 시설이 제1323절의 세부항목 (a)(아래 참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이 시설에 대해 어느 보조 의료 서비스 기관이 중대한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또는 이 시설이 제1323절의 세부항목 (c)(아래 참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다른 시설에 대해 중대한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들 경우에 이 시설은 그러한 이해관계를 환자나 환자의 대리인에게 서면상으로 공개를 하고, 해당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대리인이 다른 보조 의료 서비스 기관이나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 시설의 직원이 주문한 모든 용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시설은 환자가 선불된 인원별 할당 지불 또는 할증금에 대한 대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또는 조처하는 조직이나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대리인에게 본 세부항목의 요건에 따른 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

(h)(1) 장기 의료 시설의 입소자가 급성 질환 병원에 입원을 했으며, 병상 보유 조항에 따른 또는 주 법이나 연방법에 따른 재입소 권리를 주장하나 시설이 그 환자의 재입소를 거절하는 경우, 입소자는 시설의 거절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다.

(2) 본 세부항목에 설명된 것과 같은 시설의 거절은 연방법 하에서의 비자발적 이전으로서 취급될 것이며, 간호 시설 입소자의 이전 및 퇴소에 관한 항소에 적용되는 권리 및 절차가 본 세부항목에 의한 입소자의 항소에 적용된다.

(3) 입소자가 본 세부항목에 준거하여 항소를 하고 메디-칼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 그 입소자가 다른 시설에 배치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입소자는 병원에 머무르고 병원비는 행정적 1일 가격으로 상환되며, 청문회 관리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4) 입소자가 본 세부항목에 준거하여 항소를 하고 메디-칼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이 없는 경우, 그리고 그 입소자가 다른 시설에 배치되기로 동의하지 않으며 다른 지불 출처가 있는 경우, 그 입소자는 병원에 머무르고 청문회 관리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5) 입소자가 메디-칼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경우 그리고 다른 지불 출처가 없는 경우, 청문회와 최종 결정이 48시간 이내에 종결된다.

(i) 입소자의 지불 출처 또는 입소자가 거주하는 전문 간호 시설이나 중간 간호 시설의 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케어 인증 상태와 관계 없이, 2006년 7월 1일부터 유효한 미국 연방 법전 제42편 제483.10, 483.12, 483.13 및 483.15절은 2007년 7월 1일부터 각 전문 간호 시설 및 중간 간호 시설에 적용되며, 다만 비인증 시설은 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케어의 혜택, 보상 서비스 또는 수혜 자격 취득 절차에 대한 통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1599.2. 서론 또는 머리말; 서식

환자들의 권리를 알리는 서면 정보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있는 서식으로 서론 또는 머리말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추가적인 시설 요건은 보건 안전법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행정법 [캘리포니아주 법규집] 제22편에 설명되어 있다.

(b) 두가지 법 중 어느 법의 고의적인 또는 되풀이되는 위반은 시설 및 그 직원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초래할 수 있다.

(c) 환자들은 보복을 당함이 없이 시설 직원들에게 불만을 표현할 수 있으며, 주정부 [공중 보건부] 또는 그 대리인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1599.3. 환자의 대리인; 권리의 양도

법원 명령에 의해 무능력자로 판정된 또는 담당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또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보이는 환자 등의 본 장에 준거한 모든 권리는 그 환자의 보호자, 후견인, 근친자, 후원 기관 또는 대리 지불인에게 양도되어야 하며, 시설 자체가 대리 지불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99.4. 본 장의 구성 및 적용

본 장은 다만 환자의 권리에 대한 통보 및 설명 또는 비합리적인 비용에 관한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전문 간호 시설이나 중간 간호 시설 또는 그 직원들에게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의무나 표준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시설법 제4502-4505절 및 4512절

4502.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헌법과 법률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동일한 법적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자격이 있는 어떤 사람도 발달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입법부의 의도는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 (a)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치료 및 재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권리. 치료 및 재활 서비스와 지원은 해당 개인의 발달 가능성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하며, 가능한 한 가장 독립적이고, 생산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치료, 서비스 또는 지원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가장 제한이 적은 상태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 (b) 존엄성, 사생활 및 인도적인 진료에 대한 권리. 치료, 서비스 및 지원은 가능한 한 가장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 (c) 장애의 정도와 무관하게, 공공 기금의 지원을 받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d) 의료 관리 및 치료를 재촉할 수 있는 권리.
- (e) 종교적 자유 및 관례에 대한 권리.
- (f) 사회적 상호작용 및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참여 권리.
- (g) 신체적 운동 및 오락 활동의 기회에 대한 권리.
- (h) 불필요한 신체적 속박 또는 고립, 과도한 약물 투여, 학대 또는 방치를

당하지 않을 권리.

(i) 위험이 많은 의료 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

(j) 거주 장소 및 동거하는 사람; 교육, 취업 및 오락을 포함해 시간을 소비하는 방법; 개인적 장래의 추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시행 등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자신의 생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4502.1.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생활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려면,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정부 자금을 받는 지역 센터들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공공 또는 민간 기관들이 그러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또는 행당되는 경우 그들의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상기 공공 또는 민간 기관들은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의사결정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503. 보건 안전법 1502절에 규정된 주정부 병원, 커뮤니티 진료 시설 또는 보건 안전법 1250절에 규정된 의료 시설에 입원했거나 위탁된 발달 장애인은 다음의 권리들을 가져야 하며, 이 권리들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에 영어, 스페인어 및 기타 적절한 언어로 눈에 잘 띄도록 게시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발달 장애 서비스 부장이 결정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해 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a) 환자가 자신의 의복을 입고, 화장실 품목을 포함한 자신의 개인적

소지품을 보관하고 사용하며, 구내 식당 비용 및 사소한 구매를 위해 합리적인 금액의 돈을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b)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개인적 저장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c) 매일 방문자를 만날 수 있는 권리.

(d) 합리적으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은밀하게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권리.

(e) 우표를 포함해 쉽사리 편지 쓰기에 필요한 재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봉하지 않은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권리.

(f) 전기 충격 요법을 거절할 권리.

(g) 통증이나 정신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 수정 요법을 거절할 권리.

(h) 제5325, 5326 및 5326.3절에도 불구하고, 정신외과 수술을 거절할 권리. 정신외과 수술이란 현재 로보토미, 정신과 수술, 행동 수정 수술 등으로 불리우는 수술 그리고 다음 목적하에 수행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뇌 수술을 의미한다:

- (1) 알려진 그리고 진단된 뇌의 물리적 질환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생각, 감정, 활동 또는 행동의 수정이나 통제.
- (2) 생각, 감정, 활동 또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정상적인 뇌 기능 또는 정상적인 뇌 조직의 수정.
- (3) 뇌의 이상이 생각, 감정, 활동 또는 행동을 초래하는 확실한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 감정, 활동 또는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뇌 기능 또는 비정상적인 뇌 조직의 치료.

(i) 매일 일과, 동료의 선택, 오락 및 사회 활동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은 여러 분야에서 선택을 할 권리.

(j) 규정에 상술된 기타 권리들.

4505. 환자가 15살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4503절의 세부항목 (f) 및 (g)에서 설명된 거절의 권리는 미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의 부모, 보호자, 후견인 또는 그 미성년자의 보호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그 미성년자의 부모, 보호자, 후견인 또는 그 미성년자의 보호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이 제4503절의 세부항목 (f) 및 (g)에서 설명된 치료 또는 행동 수정 방식을 거절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치료 또는 행동 수정은 단지 동료 심사 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을 거친 후에 제공될 수 있다. 발달 장애 서비스 부장은 상기 목적을 위해 동료 심사 절차를 확립하는 규정을 1977년 3월 1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시설법 제5325-5326절

5325. 보건 안전법 제1250절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본 부의 조항에 준거해 정신의학 평가 또는 치료가 제공되는 의료 시설에 비자발적인 평가 또는 치료를 받기 위해 유치된 각 개인, 정신의학 평가 또는 치료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입원한 각 개인 및 제6부문 제2부 제2장의 제5조(제6500절과 함께 시작)에 준거해 주정부 병원에 위탁된 각 정신지체자는 다음의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들은 행당 커뮤니티의 지배적인 언어로 눈에 잘 띄도록

게시되어야 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에서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또는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정신 보건부 부장이 결정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해 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a) 환자가 자신의 의복을 입고, 화장실 품목을 포함한 자신의 개인적 소지품을 보관하고 사용하며, 구내 식당 비용 및 사소한 구매를 위해 합리적인 금액의 돈을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b)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개인적 저장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c) 매일 방문자를 만날 수 있는 권리.

(d) 합리적으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은밀하게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또는 전화를 걸어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e) 우표를 포함해 쉽사리 편지 쓰기에 필요한 재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봉하지 않은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권리.

(f) 모든 전기 충격 치료, 어떤 식으로든지 충격을 유도하는 모든 정신 치료 및 인슐린 혼수 요법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경련성 치료를 거절할 권리.

(g) 정신외과 수술을 거절할 권리. 정신외과 수술이란 현재 로보톰, 정신과 수술, 행동 수정 수술 등으로 불리우는 수술 그리고 다음 목적하에 수행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뇌 수술로 정의된다:

(1) 알려진 그리고 진단된 뇌의 물리적 질환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생각, 감정, 활동 또는 행동의 수정이나 통제.

(2) 생각, 감정, 활동 또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정상적인 뇌 기능 또는 정상적인 뇌 조직의 수정.

(3) 뇌의 이상이 생각, 감정, 활동 또는 행동을 초래하는 확실한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 감정, 활동 또는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뇌 기능 또는 비정상적인 뇌 조직의 치료.

정신외과 수술은 전두엽 전부 음향 치료를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뇌조직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정신 보건부 부장은 그러한 치료에서 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도록 적절한 규정을 공표할 것이다.

(h)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임상적 또는 행정적으로 책임이 없는 환자 대변인을 만나고 서비스를 받을 권리.

(i) 규정에 상술된 기타 권리들.

각 환자는 또한 다른 헌법상 권리 및 성문법상 권리가 있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방식으로 통보를 받아야 하며, 캘리포니아주 정신 보건국에 의하면 이 점이 흔히 오해되고, 무시되고, 거절되고 있다.

시설에 입소하는 즉시 각 환자에게는 캘리포니아주 정신 보건국이 작성한 환자의 권리 안내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정신 보건국은 이 항목에 그리고 제5157절에 상술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 항목에 상술된 권리들은 환자의 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자에 의해 포기될 수 없다.

5325.1.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법이나 규정이 구체적인 제한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헌법과 법률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동일한 법적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제1250절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자격이 있는 어떤 사람도 본부의 조항에 준거해 정신의학 평가 또는 치료가 제공되는 의료 시설에서 비자발적인 평가 또는 치료를 받기 위해 유치되었거나, 정신의학 평가 또는 치료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입원했다는 이유로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입법부의 의도는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a) 환자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촉진하는 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 치료는 환자의 개인적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b) 존엄성, 사생활 및 인도적인 진료에 대한 권리.

(c)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신체적 속박, 고립, 약물 투여, 학대 또는 방치로 인한 해로움을 당하지 않을 권리. 약물은 처벌로서, 직원의 편의를 위해, 프로그램을 대신하기 위해 또는 치료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용량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d) 의료 관리 및 치료를 재촉할 수 있는 권리.

(e) 종교적 자유 및 관례에 대한 권리.

(f) 공공 기금의 지원을 받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g) 사회적 상호작용 및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참여 권리.

(h) 신체적 운동 및 오락 활동의 기회에 대한 권리.

(i) 위험이 많은 의료 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

5325.2. 제5150, 5250, 5260 또는 5270.15절에 준거하여 유치되는 사람은 본 장에 설명된 조항에 따라 항정신병약을 사용하는 치료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5326. 시설의 운영을 책임진 전문인 또는 피지명인은 선의로서 환자의 제5325절에 근거한 권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세부항목 (g) 및 (h) 그리고 세부항목 (f)에 의거한 권리는 제5326.7절에서 상술한 조건하에서만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들이 선의로서 거부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신 보건부 부장은 권리가 거부될 수 있는 조건들을 상술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환자의 권리에 대한 거부는 환자의 치료 기록에 기입되어야 한다.

미국 연방 법전—제42편—공중 보건

제4장—보건복지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제483부—주정부 및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요건 B호--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요건

항목 483.10 입소자의 권리.

입소자는 존엄성 있는 생활, 자율 그리고 시설 내부 및 시설 외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및 서비스의 이용 능력에 대한 권리가 있다. 시설은 반드시 다음의 권리를 포함해 각 입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해야 한다:

(a) 권리의 행사.

(1) 입소자는 시설의 거주자로서의 권리 그리고 미국의 시민 또는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입소자는 시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강요받지 않고, 차별 대우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인해 보복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관할권이 있는 사법기관에서 주 법에 의해 무능력자로 판결되는 경우, 입소자의 권리는 주 법에 의해 입소자 대신 행동하도록 임명된 사람이 행사한다.

(4) 입소자가 주정부 법정에 의해 무능력자로 판결되지 않은 경우, 주 법에 따라 법적 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입소자의 권리를 행사한다.

(b) 권리 및 서비스에 대한 통보.

(1) 시설을 반드시 입소자에게 입소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구두 및 서면으로 입소자의 권리에 대해 그리고 입소자가 시설에 체류하는 동안 입소자의 행동 및 책임을 관리하는 모든 규칙 및 규정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시설은 입소자에게 주정부가 동 법의 제1919(e)(6)절 하에서 개발한 통보(통보가 있는 경우)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통보는 입소하기 전 또는 입소시 및 입소자의 체류 기간 동안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의 접수 및 그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서면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법적 대리인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i) 구도 또는 서면 요청에 의해, 24시간 이내(excluding weekends and holidays)의 최신 임상 기록을 포함해 입소자에 관한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ii) 입소자가 기록을 접수하여 검사한 후, 시설에 요청하면 기록의 원하는 부분에 대한 사진복사를 근무일로 2일 후에 커뮤니티 표준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3) 입소자는 질병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자신의 전체적 건강 상태에 대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완전히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는 치료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실험적 연구조사 참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본 항목의 조항 (8)에 상술된 사전 진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시설은 반드시--

(i)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이 있는 각 입소자가 간호 시설에 입소하는 당시 또는 입소자에게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이 생기는 당시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A) 주정부 의료 계획 하에서 간호 시설 서비스에 포함되며

입소자에게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품목 및 서비스;

(B) 시설이 제공하고 입소자에게 비용이 부과될 수 있는 기타 품목 및 서비스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부과 금액;

(ii) 본 항목의 조항 (5)(i)(A) 및 (B)에 상술된 품목 및 서비스에 변경이 있을 때 입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6) 시설은 반드시 각 입소자에게 입소 이전 또는 입소 당시 그리고 입소자의 체류 기간 중 정기적으로, 메디케어가 보상하지 않고 시설의 1일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부과금을 포함해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부과금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7) 시설은 다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i) 본 항목의 조항 (c)에 있는 개인 소지금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ii) 입소 당시 부부의 면제되지 않는 자산의 한도를 결정하고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 수준으로 낮아지는 과정에 있는 입소 배우자의 의료 비용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산을 시설 시설 밖의 배우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데 기여하는 제1924(c)절 하에서의 평가를 요청하는 권리를 포함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확립하는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설명;

(iii) 주정부 조사 및 인증 기관, 주정부 면허 사무소, 주정부 민원

처리 감찰관 프로그램, 보호 및 옹호 네트워크 그리고 메디케이드 사기 단속국 등 모든 관련 주정부 고객 옹호 단체들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의 공고;

(iv) 입소자는 입소자의 학대, 방치, 시설 내 입소자 재산의 유용 및 사전 진료 의향서 요건의 비준수와 관련해 주정부 조사 및 인증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공술서.

(8) 시설은 반드시 사전 진료 의향서에 관한 서면 정책 및 절차의 보존과 관련된 본 장의 제489부 1호에 상술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 요건들에는 모든 성인 입소자들에게 내과적 또는 외과적 치료를 수락 또는 거절하는 권리 그리고 개인이 선택적으로 작성하는 사전 진료 의향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주고 서면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사전 진료 의향서의 집행 및 해당 주 법에 대한 시설의 서면 정책 설명이 포함된다. 시설은 이러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다른 단체와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본 항목의 요건에 부응하도록 보장할 법적 책임이 있다. 성인 입소자가 입소 당시 무능력하게 되고 정보를 입수할 능력이 없는 경우 (무능력하게 하는 질병 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또는 사전 진료 의향서를 집행했는지 여부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시설은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다른 자료를 무능력한 개인의 가족 또는 대리인 또는 주 법에 따라 다른 관련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의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사전 진료 의향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일단 해당 환자가 더 이상 무능력하지 않고 정보를 입수할 능력이 회복되는 경우, 시설은 여전히 그 환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적시에 그 환자에게 직접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후속 절차가 준비되어야 한다.

(9) 시설은 각 입소자에게 입소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성명, 전문분야 및 연락 방법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10) 시설은 반드시 시설 내에 서면 정보를 눈에 잘 띄게 전시해야 하며,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혜택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러한 혜택으로 보상되는 이전의 지불 금액에 대한 환불 방법에 관한 구두 및 서면 정보를 입소자들 및 입소 신청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11) 변경에 대한 통보.

(i) 시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즉시 입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입소자의 의사와 상의해야 하며; 알고 있는 경우 입소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관여된 가족에게 통보해야 한다--

(A) 입소자가 관련되고 부상을 초래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의사의 개입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B)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사회적 상태의 중대한 변화 (즉,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또는 임상적 합병증으로 인한 건강, 정신 또는 심리사회적 상태의 악화);

(C) 치료를 시사적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 (즉, 이상 반응으로 인해 현재의 치료 형태를 중단해야 할 필요 또는 새로운 형태의 치료를 시작할 필요); 또는

(D) 항목 483.12(a)에 상술된 바와 같이 입소자를 시설에서 이전 또는 퇴소하기로 한 결정.

(ii) 시설은 또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입소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관여된 가족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A) 항목 483.15(e)(2)에 상술한 바와 같이 방 또는 동숙자 배정의 변화; 또는

(B) 본 절의 세부항목 (b)(1)에 상술된 바와 같이 연방 또는 주정부의 법이나 규정의 변화.

(iii) 시설은 반드시 입소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관여된 가족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12) 합성 별개 부분 시설의 입소. 여러 별개 부분으로 구성된 시설(본 호의 항목 483.5(c)에 정의한대로)은 반드시 입소 계약에서 합성 별개 부분 시설을 구성하는 다양한 장소들을 포함한 시설의 물리적 배치에 대해 공개해야 하며, 반드시 항목 483.12(a)(8) 하에서 여러 장소들 사이의 방 변화에 적용되는 정책을 상술해야 한다.

(c) 입소자 소지금의 보호.

(1) 입소자는 자신의 재정적 문제를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시설은 입소자들이 그들의 개인 소지금을 공탁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개인 소지금의 관리. 입소자의 서면 허가에 따라, 시설은 본 항목의 세부항목 (c)(3)-(8)에 상술된 바와 같이 시설에 공탁된 입소자의 개인 소지금을 보관하고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3) 소지금의 공탁.

(i) \$50을 초과하는 소지금. 시설은 \$50을 초과하는 입소자의 소지금을 반드시 시설의 운영 계좌와는 별도로 이자가 적립되는 계좌(또는 계좌들)에 예금해야 하며, 입소자 소지금의 모든 이자는 그 계좌에 기입되어야 한다. (합동 계좌의 경우, 각 입소자의 몫을 계산하는 별도의 회계가 있어야 한다.)

(ii) \$50 미만의 소지금. 시설은 반드시 \$50 미만인 입소자의 개인 소지금을 이자가 적립되지 않는 계좌, 이자가 적립되는 계좌 또는 소액 현금 기금으로 관리해야 한다.

(4) 회계 및 기록. 시설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시설에 맡긴 각 입소자의 소지금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별도의 회계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i) 이 회계 시스템은 반드시 입소자의 소지금이 시설의 자금 또는 입소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자금과 혼합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

(ii) 요청하는 경우 분기 명세서를 이용해 개인적인 재정 기록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법적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5) 일부 대차계정에 대한 통보. 시설은 반드시 각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통보를 해야한다—

(i) 동 법의 제1611(a)(3)(B)절에 상술된 바와 같이 입소자의 계좌 금액이 1인에 대한 SSI(생활보조금) 자원 한계액에서 \$200이 낮을 때;

(ii) 입소자의 다른 비면제 자원의 액면 금액에 추가해서, 계좌의 금액이 1인에 대한 SSI 자원 한계액에 도달하는 경우, 입소자는 메디케이드 또는 SSI 혜택 자격을 잃을 수 있다.

(6) 사망시의 양도. 시설에 개인 소지금을 공탁한 입소자가 사망하게 되면, 시설은 30일 이내에 입소자의 소지금 및 그러한 자금의 최종 회계를 입소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검인 사법권에 양도해야 한다.

(7) 재정적 안전의 보장. 시설은 계약 이행 보증서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시설에 공탁된 입소자들의 모든 개인적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이 만족할 만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8) 개인 소지금에 대한 부과금의 한계. 시설은 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케어가 비용을 지불한 모든 품목 또는 서비스(해당 면책금 및 개인 보험 부담금 금액을 제외하고)에 대해 개인 소지금에서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시설은 본 장의 항목 489.32에 따라 입소자가 요청했으며 보상되는 서비스보다 비싼 서비스에 대해 입소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은 메디케이드가 보상한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해 시설이 비용을 부과할 수 없는 점과는 관계가 없다. 메디케이드 지불 금액과 함께 면책금, 개인 보험 부담금 또는 개인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 부담금을 모두 받는 서비스 기관들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항목 447.15를 참조할 것.)

(i)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가 지불하는 금액에 포함되는 서비스. 시설은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가 보상하는 체류 과정에서 다음

범주의 품목 또는 서비스에 대해 입소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A) 본 호의 항목 483.30에서 요구되는 간호 서비스.

(B) 본 호의 항목 483.35에서 요구되는 간호 서비스.

(C) 본 호의 항목 483.15(f)에서 요구되는 활동 프로그램.

(D) 방/침대 유지 서비스.

(E) 머리 위생 용품, 빗, 브러시, 목욕 비누, 특별한 피부 질환 또는 감염 방지를 위해 전문 청결 세제가 필요한 경우의 살균 비누, 면도기, 면도 크림, 칫솔, 치약, 의치 접착제, 의치 세척제, 치실, 보습 로션, 화장지, 소독용 솜, 면봉, 방취제, 요실금 관리 용품, 생리대 및 관련 용품, 수건, 목욕동 타월, 병원 가운, 비처방약, 머리 및 손톱 위생 서비스, 목욕 그리고 기본적인 개인 세탁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입소자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일상적인 개인 위생 품목 및 서비스.

(F) 본 호의 항목 483.15(g)에서 요구되는 의료 관련 복지 서비스.

(ii) 입소자의 소지금에 부과될 수 있는 품목 및 서비스. 다음은 입소자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 시설이 입소자에게 부과된다고 통보한 경우 그리고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가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시설이 입소자의 소지금에 부과할 수 있는 일반 범주의 품목 및 서비스의 예:

(A) 전화.

- (B) 개인용 텔레비전/라디오.
 - (C) 흡연용 재료, 잡화, 진기한 상품, 캔디 등 개인용 위안 품목.
 - (D) 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케어의 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화장용 및 몸단장 품목과 서비스.
 - (E) 개인용 의복.
 - (F) 개인용 독서 재료.
 - (G) 입소자를 위해 구입한 선물.
 - (H) 화초.
 - (I) 본 호의 항목 483.15(f)에서 제공된 활동 프로그램 범위 밖의 사회적 행사 및 여행.
 - (J)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간호사 또는 보조원 등 비보상 특별 간호 서비스.
 - (K) 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감염 통제를 위한 고립)를 제외한 개인용 방.
 - (L) 본 호의 항목 483.35가 요구하는대로 일반적으로 시설이 준비하는 음식 대신 요청되는 특별 요리 또는 대안 음식.
- (iii) 품목 및 서비스의 요청.

(A) 시설은 입소자(또는 입소자의 대리인)가 요청하지 않은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입소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B) 시설은 입소 또는 계속 체류의 조건으로 입소자(또는 입소자의 대리인)가 품목 및 서비스를 요청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C) 시설은 요청시 비용이 부과될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해 그리고 부과될 금액에 대해 입소자(또는 입소자의 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d) 무료 선택. 입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1) 개인적인 주치의를 선택한다;

(2) 간호 및 치료에 대해 그리고 입소자의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호 및 치료의 변화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통보를 받는다;

(3) 무능력한 것으로 판결되거나 또는 주 법에 의해 무능력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한, 간호 및 치료에 대한 계획 또는 간호 및 치료에 대한 변화 계획에 참여한다.

(e) 사생활 및 비밀 유지. 입소자는 개인적인 사생활 및 개인 기록과 임상 기록의 비밀 유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

(1) 개인적인 사생활은 숙박 시설, 의과적 치료, 서면 및 전화 의사소통, 개인적 진료, 방문 그리고 가족 및 입소자 그룹과의 만남이 포함하지만, 시설이 각 입소자에게 개인적인 방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2) 본 절의 세부항목 (e)(3)의 제공 사항을 제외하고, 입소자는 시설 밖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개인 기록 및 임상 기록의 공개를 허가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 기록 및 임상 기록의 공개에 대한 거절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i) 입소자가 다른 의료 기관으로 이전되었다; 또는

(ii) 기록의 공개가 법에 의해 요구된다.

(f) 불만. 입소자는 다음에 대한 권리가 있다--

(1) 차별 대우 또는 보복을 받지 않고 불만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한 불만은 이미 제공된 치료 뿐만 아니라 아직 제공되지 않은 치료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2) 다른 입소자의 행동에 관한 것을 포함해 입소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불만을 시설이 해결하도록 재촉할 수 있다.

(g) 조사 결과의 검토. 입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연방 또는 주정부 조사자들이 시설에 대해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결과 그리고 시설과 관련된 실시 중인 정정 계획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시설은 반드시 입소자들이 쉽사리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러한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결과의 검토에 대한 통보를 게시해야 한다;

(2) 고객 옹호자로서 활동하는 기관에서 정보를 접수하고, 그 기관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h) 작업. 입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시설을 위한 서비스 수행을 거절할 수 있다;

(2) 다음의 상황에서 입소자가 원하는 경우 시설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i) 시설이 진료 계획에 작업이 필요하거나 희망되는 것으로 기록했다;

(ii) 작업 계획이 서비스 수행의 성격 및 자원적인 서비스인지 또는 대가가 지불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술한다;

(iii)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일반적인 임금 수준 이상이다;

(iv) 입소자가 진료 계획에 설명된 작업 예정에 동의한다.

(i) 우편물. 입소자는 다음의 권리를 포함해 서면 의사소통에 대한 사생활 보호 권리가 있다--

(1) 개봉되지 않은 우편물을 보내고 신속히 받을 수 있다;

(2) 입소자의 비용으로 준비한 필기 용지, 우표 및 필기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j) 접촉 및 방문의 권리. (1) 입소자는 권리가 있으며 시설은 다음 사람들이

모든 입소자를 즉시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i) 장관의 모든 대리인;
 - (ii) 주정부의 모든 대리인;
 - (iii) 입소자의 개별적인 의사;
 - (iv) 주정부 장기 요양 민원 처리 감찰관 (1965년 노인복지법의 제307(a)(12)절에 의해 확립);
 - (v)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보호 및 옹호 담당 기관 (발달장애자지원 및 권리장전법 C부에 의해 확립);
 - (vi) 정신 질환 환자를 위한 보호 및 옹호 담당 기관 (정신 질환 환자 보호 및 옹호법);
 - (vii) 입소자, 직계 가족 또는 입소자의 다른 친척이 어느 때고 동의를 거부 또는 철회할 권리가 있다;
 - (viii) 합리적 제한이 있고, 입소자, 입소자의 동의하에 방문 중인 사람이 어느 때고 동의를 거부 또는 철회할 권리가 있다.
- (2) 시설은 입소자에게 의료적, 사회적, 법적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이 합리적으로 입소자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소자는 어느 때고 동의를 거부 또는 철회할 권리가 있다.
- (3) 시설은 본 절의 세부항목 (j)(1)(iv)에 설명된 바와 같이 주 법에 따라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법적 대리인이 허락하는 경우 주정부 민원 처리 감찰관이 입소자의 임상 기록을 검토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k) 전화. 입소자는 합리적으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은밀하게 전화를 걸수 있는 권리가 있다.

(l) 개인적 재산. 입소자는 공간이 허락하는 대로 환자 자신이나 다른 환자의 건강, 안전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일부 가구 및 적절한 의복을 포함한 개인적 소유품을 보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m) 결혼한 부부. 결혼한 입소자들이 동일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두사람이 동의하는 경우, 입소자는 배우자와 같은 방에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n) 자신 투약. 항목 483.20(d)(2)(ii)이 정의한대로 인접 전문인 팀이 안전한 관행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각 입소자는 스스로 약물을 투약할 수 있다.

(o) 일부 이전에 대한 거절.

(1) 이전의 목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입소자는 같은 기관 내에서 다른 방으로의 이전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

(i) 확실한 전문 간호 시설의 어느 부분에 거주하는 입소자를 전문 간호 시설의 일부가 아닌 어느 부분으로 이전, 또는

(ii) 확실한 간호 시설의 어느 부분에 거주하는 입소자를 확실한 전문 간호 시설의 어느 부분으로 이전,

(2) 본 항목의 세부항목 (o)(1)에 의해 이전을 거절하는 입소자의 권리 행사는 그 개인의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483부 주정부 및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요건

B호 --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요건

항목 483.12 입소, 이전 및 퇴소의 권리.

(a) 이전 및 퇴소—

(1) 정의: 이전 및 퇴소는 옮겨가는 침대가 물리적으로 동일한 건물 안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입소자를 인증 시설 밖의 침대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전 및 퇴소는 입소자를 동일한 인증 시설 안의 침대로 이동하는 의미하지 않는다.

(2) 이전 및 퇴소의 요건. 시설은 다음 상황이 아닌 한, 입소자가 시설 내에 머물도록 허락하고, 시설로부터 이전 또는 퇴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i) 입소자의 복지를 위해 이전 또는 퇴소가 필요하며, 그 시설이 입소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ii) 입소자의 건강이 충분히 향상되었으며 입소자는 더 이상 그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전 또는 퇴소가 적절하다;

(iii) 그 시설에서 입소자의 안전이 위태롭다;

(iv)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시설에서의 입소자 건강이 위태로울 것이다;

(v) 입소자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통보 후에도 그 시설에 머물기 위한 비용을 지불(또는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가 지불하도록)하지 않았다. 입소자가 시설에 입소한 후에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생기는 경우, 시설은 단지 메디케이드 하에서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을 입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는

(vi) 시설의 운영이 중지되었다.

(3) 증거 서류. 시설이 입소자를 본 항목의 세부항목 (a)(2)(i)에서 (v)까지 상술된 상황 하에서 이전 또는 퇴소하는 경우, 반드시 입소자의 임상 기록을 증거서류로 만들어야 한다. 증거서류는 다음의 사람이 작성해야 한다--

(i) 본 항목의 세부항목 (a)(2)(i) 또는 세부항목 (a)(2)(ii)에 의해 이전 또는 퇴소가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담당의사;

(ii) 본 항목의 세부항목 (a)(2)(iv)에 의해 이전 또는 퇴소가 필요한 경우, 의사;

(4) 이전하기 전 통보. 시설은 입소자를 이전 또는 퇴소하기 전에 반드시--

(i) 입소자에게 그리고 알고 있는 경우 가족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입소자의 이전 또는 퇴소에 대해 그리고 이동의 이유에 대해 서면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보해야 한다.

(ii) 그 이유를 입소자의 임상 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iii) 통보에 본 항목의 세부항목 (a)(6)에 설명된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5) 통보 시간. (i) 본 항목의 세부항목 (a)(5)(ii)에 상술된 때가 아닌 경우, 시설은 입소자의 이전 또는 퇴소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본 항목의 세부항목 (a)(4)에서 요구되는 이전 또는 퇴소 통보를 해야 한다.

(ii) 다음의 경우 이전 또는 퇴소 이전에 실행이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통보를 해야 한다--

(A) 본 항목의 세부항목 (a)(2)(iii) 하에서 시설 내 입소자의 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다;

(B) 본 항목의 세부항목 (a)(2)(iv) 하에서 시설 내 입소자의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다;

(C) 본 항목의 세부항목 (a)(2)(ii) 하에서 입소자의 건강이 충분히 향상되어서 즉각적인 이전 또는 퇴소가 가능하다;

(D) 본 항목의 세부항목 (a)(2)(i) 하에서 입소자의 긴급한 의료적 필요로 인해 즉각적인 이전 또는 퇴소가 필요하다; 또는

(E) 입소자가 시설에 30일 동안 거주하지 않았다.

(6) 통보의 내용. 본 항목의 세부항목 (a)(4)에 상술된 서면 통보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i) 이전 또는 퇴소의 이유;

(ii) 이전 또는 퇴소의 유효 날짜;

(iii) 입소자가 이전 또는 퇴소되는 장소;

(iv) 입소자는 이 조치에 대해 주정부에 항소할 수 있다는 성명;

(v) 주정부 장기 요양 민원 처리 감찰관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vi) 발달 장애 입소자들이 있는 간호 시설의 경우, 발달장애자지원 및 권리장전법 C부에 의해 확립된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보호 및 옹호 담당 기관의 우편 주소 및 전화 번호;

(vii) 정신 질환 입소자들이 있는 간호 시설의 경우, 정신 질환 환자 보호 및 옹호법에 의해 확립된 정신 질환 환자를 위한 보호 및 옹호 담당 기관의 우편 주소 및 전화 번호;

(7) 이전 또는 퇴소를 위한 적응 지도. 시설은 시설로부터의 안전하고 질서적인 이전 또는 퇴소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입소자들에게 충분한 준비 작업 및 적응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8) 합성 별개 부분 시설에서의 방의 변화. 합성 별개 부분 시설(항목 483.5(c)에서 정의된대로)에서의 방의 변화는 입소자가 다른 장소에 있는 또 하나의 합성 별개 부분 시설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입소자들이 거주하는 특정 건물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b) 병상 보유 정책 및 재입소 통보—

(1) 이전하기 전 통보. 간호 시설은 입소자를 병원으로 이전하거나 입소자가 치료 휴가를 떠나도록 허락하기 전에, 반드시 입소자 및 입소자의 가족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다음 사항을 상술하는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i) 입소자가 그 기간 중 간호 시설에서의 체류를 계속하기 위해 돌아오도록 허락 받을 수 있는 주정부 의료 계획 하에서의 병상 보유 정책;

(ii) 본 항목의 세부항목 (b)(3)와 일치해야 하며 입소자가 돌아오도록 허락하는 간호 시설의 병상 보유 정책.

(2) 이전시 병상 보유 통보.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 휴가를 떠날 때, 시설은 반드시 입소자 및 입소자의 가족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본 항목의 세부항목 (b)(1)에 설명한 병상 보유 정책의 기간을 상술하는 서면 통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입소자의 시설로 돌아올 수 있는 허가. 간호 시설은 병원 입원 또는 치료 휴가 기간이 주정부 의료 계획 하에서의 병상 보유 기간을 초과한 입소자가 다음 상황에서 반 독실의 침대가 최초로 이용가능한 시간에 즉시 시설에 재입소 할 수 있는 서면 정책을 확립하고 그를 따라야 한다-

(i) 입소자가 그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ii) 입소자에게 메디케이드 간호 시설 서비스 수혜 자격이 있다.

(4) 합성 별개 부분 시설에 대한 재입소. 입소자가 재입소되는 간호 시설이 본 호의 항목 483.5(c)에 정의된 합성 별개 부분 시설인 경우, 반드시 입소자가 이전에 거주하던 합성 별개 부분 특정 장소의 이용가능한 침대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한다. 재입소 당시 그 장소에 이용가능한 침대가 없을 경우, 그 입소자에게 그 장소에 있는 침대가 처음으로 이용가능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c) 우수한 진료에 대한 동등한 기회.

(1) 시설은 이전, 퇴소 그리고 주정부 의료 계획 하에서 보상의 출처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정책 및 관행을 확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2) 시설은 항목 483.10(b)(5)(i) 및 (b)(6)의 부과금에 관한 요건에 준하여 메디케이드가 없는 입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어떤 금액도 부과할 수 있다.

(3) 주정부는 주정부 의료 계획 이외에 추가적으로 입소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

(d) 입소 정책.

(1) 시설은 절대로--

(i) 입소자 또는 잠재적 입소자가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수혜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ii) 입소자 또는 잠재적 입소자가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이 없다고 또는 그러한 혜택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2) 시설은 절대로 입소 또는 급속 입소 또는 계속적인 시설 체류를 조건으로 시설에 대한 지불의 제3자 지불 보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시설은 시설의 진료 비용 부담이 가능한 입소자의 수입 또는 자원에 대해 법적 접근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재정적 책임 없이 시설의 부과금을 지불하기 위해 입소자의 수입 또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다.

(3)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간호 시설은 절대로 입소 또는 급속 입소 또는 계속적인 시설 체류를 조건으로, 주정부 의료 계획 하에서 요구되는 금액에 추가한 비용, 선물, 금전, 기증 또는 기타 배려를 부과하거나, 간청하거나, 수락하거나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i) 간호 시설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요청하고 받았으며, 주정부 의료 계획의 "간호 시설 서비스"에 포함된 것으로 명세되지 않은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설이 그 이용가능성 및 비용에 대해 적절한 통보를 했으며, 그러한 서비스의 요청 및 수령을 입소 또는 계속적인 시설 체류의 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그러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ii) 간호 시설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있는 입소자를 위한 입소 또는 급속 입소 또는 계속적인 시설 체류를 조건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잠재적 입소자와 관련이 있는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자선적, 종교적 또는 박애적인 기증금을 간청, 수락 또는 수령할 수 있다.

(4) 주정부들 또는 정치적 세부 부문들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기 위해 이 항목에 상술된 예보다 더욱 엄격한 입소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83부 주정부 및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요건

B호 --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요건

항목 483.13 – 입소자의 행동 및 시설의 관행.

(a) 억제. 입소자는 입소자의 의료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징계 또는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신체적 또는 화학약품적 억제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b) 학대. 입소자는 언어적, 성적,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 체벌 그리고 비자발적인 격리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483부 주정부 및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요건

B호 --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요건

항목 483.15 삶의 질.

시설은 반드시 각 입소자의 삶의 질을 촉진하고, 유지하고, 증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서 돌보아야 한다.

(a) 존엄성. 시설은 반드시 입소자의 존엄성을 촉진하고, 유지하고, 증대하며, 입소자의 개성을 완전히 인식하고 존경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서 입소자들에 대한 관리를 촉진해야 한다.

(b) 자율 및 참여. 입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자신의 관심, 평가 및 진료 계획과 일관되는 활동, 일정 및 건강 관리를 선택할 수 있다;

(2) 시설의 내부 및 외부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3) 시설 내 생활의 측면에 대해 입소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c) 입소자 그룹 및 가족 그룹에의 참여.

(1)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입소자 그룹을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의 가족은 시설 내에서 다른 입소자들의 가족들과 교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시설을 입소자 또는 가족 그룹에게 사적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4) 직원이나 방문자들은 이러한 그룹의 초청에 참석할 수 있다;

(5) 시설은 그룹 회의의 서면 요청에 지원을 제공하고 반응하는 책임이 있는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6) 입소자 또는 가족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 시설내에서 입소자의 진료 및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안된 정책 및 운영 결정과 관련된 입소자들과 가족들의 불만 및 추천 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기타 활동에 대한 참여. 입소자는 시설 내 다른 입소자들의 권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사회적, 종교적 및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 필요에 대한 편의 제공. 입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자신의 또는 다른 입소자의 건강 또는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을 제외하고, 개인의 필요 및 선호사항에 대한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는 시설에서 주거하고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시설 내에서 입소자의 방 또는 동숙자가 변경되기 전에 통보를 받을 권리.